

IV. 헌법소원 사례

사죄광고가 명예회복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면,
가해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내지 굴욕감수를 강요하는
사죄광고제도는 불필요한 국민 기본권의
제한이 된다할 것이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10.자 결정(89카3299)

헌법재판소 1991. 4. 1.자 결정(89헌마160)

事實概要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 법원이 민법 제764조에 따라 내릴 수 있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중 「사죄광고」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 재판관)는 1991년 4월 1일, 東亞日報社가 낸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 특칙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죄광고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고 인격의 존엄을 해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명예회복에 필요한 처분중 △원래기사의 취소광고 △가해자의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문 게재 △가해자가 패소한 민사금전 배상판결의 게재 등은 위헌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래 사과라는 행위는 윤리적 판단과 감정에 따른 의사의 표현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따라서 사죄광고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국가가 재판이라는 권력작용을 통해 자기의 신념에 반해 윤리적 판단을 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東亞日報社가 1988년 여성동아 6월호에 『全敬煥과의 소문기사에 5억 청구한 金星希 진상해명』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자, 金씨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1988년 7월 민사소송을 내 승소하고 사죄광고제재명령까지 받아내자, 동아일보사측은 1989년 7월 서울민사지법에 위헌제청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민사지법 제14부(재판장 조희태 부장판사)는 「보도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진실 내지 허위보도를 한 경우 그 정정 내지 사과 광

고를 게재하는 것은 헌법적 제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고, 東亞日報社는 1989년 7월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법 위헌제청신청 결정문

사 건 : 89카33299 위헌 제청 신청

신 청 인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자 회장 김 상 기

2. 김

서울

3. 권

서울

4. 현

서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승 서

주 문 : 신청인들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 1. 신청인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이 김 가 원고, 신청인들이 피고로 된 당원 88가합31161 손해배상(기)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령인 바, 원고는 위 사건 소로써 신청인들에 대하여 위 법조에 근거를 둔 사죄광고를 청구하고 있는데 본조에 의한 사죄광고를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면 대체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대체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공권력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본인의 이름으로 사상 및 의견의 표현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 출판의 자유에도 위배되어 헌법위반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제청할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764조는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금전배상주의」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유일한 예외로서 불법행위의 태양이 명예훼손인

경우「원상회복」의 방법에 의한 손해전보를 인정한 것이다.

본래 손해의 완전한 전보라는 차원에 있어서는 원상회복 방법이 이상적인 것이고 다만 배상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가 통용되는 것이며, 독일, 스위스, 일본 등 대륙법계의 입법례에서는 모두 원상회복에 의한 손해배상을 원칙 또는 예외적인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헌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에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 및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되지 않는 자유」인 침묵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것은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으나, 과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하여지는 사죄광고가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건대, 사죄광고의 내용이 채무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현저히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한 채무자로서 사실의 진상을 밝히고 진지한 사과의 뜻을 표명함에 그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러한 취지의 내용을 신문등에 게재 명령한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굴욕적 정신적 침해를 과한다거나 윤리적 의사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내용의 사죄광고야말로 채무자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피해자의 법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다. 또한, 모든 국민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짐은 헌법 제21조의 규정상 명백하나, 이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같은 조 제4항)는 제한 및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이른바 일반적 권리유보로서 「공공복리등에 의한 법률에 의한」 제한에 의하여 그 한계를 지닌다 할 것이고, 한편, 보도기관이 갖는 언론의 자유에 비진실 내지 허위를 보도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음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도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진실 내지 허위보도를 한 경우 그 정정 내지 사과광고를 제재하는 것은 앞서 본 헌법적 제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전보의 방법을 금전배상에만 국한한다면 명예라는 법익을 침해받은 피해자의 권리는 종국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임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의 규정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7조의 규정에 내재하는 헌법정신은 무시하게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 사료된다.

라. 더구나, 민법 제764조의 규정은 단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고만 되어있을

뿐 사죄광고를 손해전보의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도 아닌 이상 위 조문 자체를 들어 헌법위반이라 주장할 근거는 더욱 박약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7. 10.

재판장 판사 조 회 태
판사 박 중 연
판사 장 성 원

헌법재판소 결정문

사 건 : 89헌마160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2. 김

서울

3. 권

서울

4. 현

서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 승 서

관련소송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31161 손해배상(기) 청구사건

주 문 : 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동아일보사라고만 한다.)는 일간신문 및 월간잡지인

여성동아등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청구인 김 ○은 동아일보사의 대표이사 겸 위 여성동아의 발행인이며 청구인 권 ○은 위 여성동아의 주간이고 청구인 현 ○은 위 여성동아의 기자이다.

청구의 김 ○은 위 여성동아 1988년 6월호에 게재된 기사가 자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1988. 7. 18. 청구인들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및 민법 제764조에 의한 사죄광고를 청구하는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소송사건에서 민법 제764조가 명예훼손의 경우에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2항에 의한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민사지방법원 89카33299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89. 7. 10. 위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들은 같은 달 15.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서 같은 달 24. 헌법재판소에 위 민법 제764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사죄광고를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포함시킬 때 동조항이 위헌인가의 여부로서, 민법 제76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주장

가. 청구인들의 주장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란 주로 사죄광고를 뜻하는데, 법원이 판결로써 사죄광고를 명하고 이를 강제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본인의 본심에 반하여 사물의 시비와 선악의 판단을 외부에 표현하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9조 소정의 양심의 자유의 한 내용인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764조는 헌법 제19조 및 제2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

사죄광고의 내용이 채무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현저히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한 채무자로서 사실의 진상등을 밝히고 진지한 사과의 뜻을 표명함에 그치는 정도의 것이라면 사죄광고의 명령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

나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헌법 제21조 제4항)를 벗어난 행동에 대하여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가능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민법 제764조의 규정은 단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사죄광고를 손해전보의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문 자체를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다. 법무부 장관의 의견

위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와 같다.

3. 판단

가. 우리나라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으로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나(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4조), 예외적으로 민법 제764조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금전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이와 함께 침해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원상회복적 구제를 인정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764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대표적 예가 사죄광고게재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학설·판례였다. 생명권이나 신체권의 침해 즉 살인이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라도 사죄강제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오로지 명예권 침해의 경우에 한정되는 특유한 구제방법이기도 한 것으로, 이에 의한 사죄광고게재를 명하는 판결은 대체집행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통설·판례였다. 이처럼 사죄광고게재가 민법 제764조 소정의 처분에 포함된다고 할 때 과연 동조항이 합헌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핀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 바, 여기의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헌법과 달리 양심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와도 구별하고 사상의 자유에 포함시키지 않는 채 별개의 조항으로 독립시킨 우리 헌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며, 이는 개인의 내심의 자유, 가치판단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리의 명확한 확인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초가

되고 인간의 내심의 영역에 국가권력의 불가침으로 인류의 진보와 발전에 불가결한 것이 되어 왔던 정신활동의 자유를 보다 완전히 보장하려는 취의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른바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18조 제2항에서도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죄광고제도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비행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심에 반하여 깊이 「사과한다」하면서 죄악을 자인하는 의미의 사죄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재판이라는 권력작용을 통해 자기의 신념에 반하여 자기의 행위가 비행이며 죄가 된다는 윤리적 판단을 형성 강요하여 외부에 표시하기를 명하는 한편 의사·감정과 맞지 않는 사과라는 도의적 의사까지 광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사죄광고의 강제는 양심도 아닌 것이 양심인 것처럼 표현할 것의 강제로 인간 양심의 왜곡·굴절이고 결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형성의 강요인 것으로서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의 제약(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살펴건대 원래 깊이 「사과한다」는 행위는 윤리적인 판단·감정 내지 의사의 발로인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이라야 할 것이며 그 때 비로소 사회적 미덕이 될 것이고, 이는 결코 외부로부터 강제하기에 적합치 않은 것으로 이의 강제는 사회적으로는 사죄자 본인에 대하여 굴욕이 되는 것에 틀림없다. 사과의 정도에 따라 굴욕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사과」의 문구가 포함되는 한 그것이 마음에 없는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자존심에 큰 상처요 치욕임에 다름없으며, 「사과문」, 「진사문」, 「해명서」 등 어떠한 명목의 것이든 관계없이 그러하다. 더구나 사죄광고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굴욕적인 의사표시를 자기의 이름으로 신문·잡지 등 대중매체에 게재하여 일반세인에게 널리 광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굴욕적인 내용을 온세상에 광포하면서도 그것이 소송의 성질상 형식적 형성의 소에 준하는 것임에 비추어 그 구체적 내용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의 자발적 의사형성인 것 같이 되는 것이 사죄광고이며 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데도 본인의 이름으로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되게 되는 것이 그 제도의 특질이다. 따라서 사죄광고 과정에서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이 무시되고 국가에 의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되어 인격형성에 분열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죄광고제도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엄과 가치 및 그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

권에 큰 위해도 된다고 볼 것이다.

나. 이렇듯 양심표명의 강제이고 인격권의 제한임에 틀림없는 사죄광고제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의 명예회복 즉 그 인격권보호와의 상관관계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화 될 수 있는 제한이라고 할 것인가를 다음에서 살핀다.

(1) 우선 사죄광고제도가 헌법적 기준에 입각하여 볼 때 명예훼손의 경우에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764조의 규정취지에 적합한가를 살펴본다. 가해자가 자발적인 사죄를 거부하거나 혹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하면서 불법행위의 성립 자체를 다룰 때에 국가가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분명히 가해자의 판단이나 감정을 강제하는 것이고, 가해자에게 부당하고 불필요한 굴욕만을 강요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이다. 물론 그것이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 것일는지 모르나 최후의 수단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오히려 필요와 정도를 넘어서는 수단인 것으로 보여진다. 즉 피해자가 받은 굴욕에 대하여, 사죄의 의사가 없거나 혹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데도 국가의 강제력으로 불법행위의 자인·사죄라는 사회적 굴욕을 새로 가해자에게 감수시켜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는 분명코 일종의 응보적 보복에 가까운 것이어서 문명국가라면 응당 수호해야 할 기본가치인 인본주의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며 이제는 시대적 감각을 잃은 원시형의 「이에 는 이, 눈에 는 눈」의 현대판 「탈리오」라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민사책임이 행위자에 대한 형사법적인 공적 제재인 것에서 분화되어 피해자가 받은 손해의 합리적 전보라는 것을 목적으로 바뀐 오늘날에 있어서 국가에 의한 사죄의 강제는 분명히 민사책임의 목적과 본질에 어긋난 불필요한 효과의 추구라고 할 것이다. 생각건대 민법 제764조에서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처분에 의하여 사죄를 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응보적 주관적인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만으로는 전보가 안 되는 훼손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객관적인 평가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대저 하기 싫은 사죄의 의사표시를 본인의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온누리에 광고시키는 것은 보복감정의 만족에 중점을 둔 고대법적 발상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며 명예훼손죄에 의한 형사적 처단으로 만족하여야 할 보복감정을 민사책임에서까지 확장하여 충족시키려고 했다할 것으로 민사책임속에 형사책임이 혼재된 전근대적인 것이며 이 점에서 어디까지나 민사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64조의 제도적 의의와 목적에는 적합치 않은 처분이라 볼 것이다. 현재 명예훼손의 경우에 곧 사죄광고가 주된 구제방법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 역작용으로 이때에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금전배상은 한낱 부수적·장식적 의미밖에 없게 되어 그 배상액은 극히 미미한 정도의 낮은 수액으로

고착되게 됨으로써 헌법 제21조 제4항 후단에서도 밝히고 있는 명예훼손의 경우에 손해전보라는 배상제도의 본질적 기능발휘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2) 나아가 사죄광고제도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필요부득이한가의 여부를 살펴본다. 사죄광고제도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유일한 제도는 결코 아닌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현재 일본에서만 사죄광고의 강제가 인정되고 있으나 그 곳에서도 위헌론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영미, 독일, 불란서, 스위스 등 제국에서는 현재 훼손된 명예회복의 방법으로 사죄광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미의 경우도 명예훼손이 된 때에 회복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해자의 자발적 사죄는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그치고 있으며, 독일, 불란서, 스위스에서는 가해자의 주장의 취소를 명하거나, 명예훼손의 사실을 확인하는 판결 또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요지 공시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 제764조의 적용에 있어서도 사죄광고를 구하는 판결이 아니고도 ①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의 신문·잡지 등에 게재 ② 형사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의 신문·잡지 등에 게재 ③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등의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하여도 사죄광고의 경우처럼 양심결정의 강제나 인격권을 무시하는 등의 헌법위반의 문제는 별로 생길 수가 없다. 취소광고라 하더라도 윤리적 판단이 여기에 개재된 것이 아니고 공연히 적시된 사실의 존재의 취소를 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764조에 기하여 명하는 처분이라함은 피해자에 대하여 일단 생긴 사회로부터의 부정적 평가를 가능한 한 정정시키려는 처분 곧 부정적 평가의 자료가 되었던 정보의 정정의 효과가 있는 처분을 뜻한다 한다면 사죄광고 아닌 위에서 본 다른 방법도 민법 제764조의 소기의 목적을 달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다른 처분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고 또 금전배상 청구도 배제하지 않는 터이며 결코 사죄광고만이 명예회복에 유일무이의 수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태여 가해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 내지 굴욕감수를 강요하는 사죄광고제도는 어디까지나 과도한 것이며 또한 불필요한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제도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 될 수 없어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

다면 민법 제764조가 동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이라면 동규정은 헌법에 위반될 수 밖에 없다. 바꾸어 말하면 민법 제764조는 동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는 민법 제764조와 같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거나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는 조문에 대하여 한정축소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합헌적 의미를 천명한 것이며, 그 의미를 넘어서 확대는 바로 헌법에 위반되어 채택할 수 없다는 뜻이다(당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참조).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견해일치를 보았다.

1991. 4. 1.

□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재판관 이 성 렬
재판관 변 정 수
재판관 김 진 우
재판관 한 병 채
재판관 이 시 윤
재판관 최 광 루
재판관 김 양 균
재판관 김 문 희

.....

현행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피해자의
반론게재청구권으로 해석되고, 이는 언론의 자유와
합리적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1989. 7. 11.자 결정(89카194)

헌법재판소 1991. 9. 16.자 결정(89헌마165)

事實概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1991년 9월 16일 中央日報社가 정정보

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과 제19조 제3항이 헌법상의 언론자유보장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언론자유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에게 언론보도를 반박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 특색이 있으므로 언론자유와의 관계는 기본권의 조화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평가돼야 한다」면서, 「이 제도는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의 조화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낸 한병채·이시윤 재판관은 「정정보도청구권은 일반소송과 달리 약식절차에 따르게 함으로써 언론사의 발행인·편집인에게 충분한 방어기회를 주지 못해 평등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中央日報社は 1988년 7월 23일자 「취재수첩」란의 기사에 대해 파스퇴르유업(주)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낸 정정보도청구권심판에서 패소하자 1989. 3. 서울고등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근거가 되는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과 그 재판절차를 규정한 제19조 제3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위반된다며 위헌여부심판제청을 냈다. 서울 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용훈 부장판사)가 이유없다고 기각하자, 1989년 7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서울고등법원 위헌여부심판제청 결정문

사 건 : 89카194 위헌여부심판제청

신 청 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이 종 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승 현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이 법원에 계속중인 89나7209호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와 이 사건 신청인간의 정정보도제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청구의 근거가 되는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과 그 재판절차를 규정한 제19조 제3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위반되는 법률로서 위 법률의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위 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

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1조는 그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아 대중매체에 의한 개인의 법익의 침해방지와 그 피해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바로 헌법이 규정한 이러한 개인의 명예나 권리가 언론·출판에 관한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그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와 그 실현방법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이의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그 권리행사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16조 제3항 단서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에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과 아울러 이로 인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같은 법 제16조 제4항, 제5항과 같은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6조는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적 법익과 권리보호의 적절한 조화를 꾀하고 있는 법률로서 그 어느 조항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더우기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이 이러한 정정보도에 관한 재판절차를 긴급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는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전파력이 강한 대중매체인 정기간행물의 속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침해된 인격적 법익 및 권리에 관한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 역시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규정한 위 법률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항, 제4항 어디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7. 11.

재판장 판사 이 용 훈
판사 정 인 진
판사 김 이 수

헌법재판소 決定文

사 건 : 89헌마165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김 동 익

대리인 변호사 장 순 호, 조 치 형

관련소송사건 : 서울고등법원 89나7209 정정보도게재청구

주 문 :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1987. 11. 28 법률 제3979호)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외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는 이 사건 청구인이 발행하는 일반 일간신문인 중앙일보의 1988. 7. 23.자 제8면 「취재수첩」란의 기사가 자신과 관련된다고 주장하면서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그 기사내용에 대한 정정보도게재청구의 심판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 1989. 1. 13. 선고 88카43429로 인용판결을 받았다.

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 사건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 89나7209로써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중 위 법원에 89카194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한 이 법 제16조 제3항 및 그 절차를 규정한 이 법 제19조 제3항이 헌법상의 평등권 및 언론의 자유의 보장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1989. 7. 11.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달 13. 위 결정서의 송달을 받고 같은 달 27. 헌법재판소에 이 법 제16조 제3항 및 제19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법 제16조 제3항 및 제19조 제3항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 및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위 각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정정보도청구권) 제3항 :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정정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

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9조(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 제3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제인의 의견의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이 법 제16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제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나 보도기관의 귀책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 즉 이 법 소정의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정보도를 당해 정기간행물에 무료로 게재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는 헌법상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제도이고, 가사 헌법체계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요내용인 보도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질서에 어긋나며, 평등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정정보도청구사건은 민사소송법의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함으로써 소명으로 족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리하게 되고, 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되며, 불복수단마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실질적으로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며, 한편 위 법률조항이 규정한 정정보도의 본질 및 내용은 이른바 피해자의 「반론권」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을 「정정보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법원의 실무관행도 「정정보도문」이라는 표제 아래 반박문의 게재를 명하여 마치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비례성 및 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과잉제한에 해당한다.

나.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법이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헌법 제21조 제4항 소정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는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권리의 보호와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장과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제도이다. 피해자가 그 권리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거나 정정보도의 내용이 사실에 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데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또한 그 재판의 절차를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전파력이 강한 대중매체인 정기간행물이 가진 특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반박하는 권리를 신속하게 실현하여야 할 필요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법무부 장관과 공보처 장관의 의견

이 법 제16조에 규정한 정정보도청구제도는 이른바 반론권을 제도화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일 뿐 언론기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기관의 귀책 여부를 요구하지도 않고,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근거인 헌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개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도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이 반론권을 입법하면서 그 명칭을 「정정보도청구」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그 제도의 본래의 뜻에 맞지 아니하여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러한 용어의 선택에 따라 권리의 본질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으로도 반박문은 언론기관의 이름이 아닌 정정보도청구인의 이름으로 게재하고 있으므로 권리의 성질이 오해될 위험성은 없다. 정정보도청구사건을 가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속한 권리실현을 위한 것이고, 그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정정보도청구제도는 그 권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등 상당한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으므로 언론기관이 사실보도에 충실하는 한 청구권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언론자유 침해는 물론 재판청구권의 제한은 문제될 수 없다.

라. 관련 소송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와 같다.

3. 판단

가. 정정보도청구권의 유래 및 의의와 헌법상의 근거

(1) 유래

언론의 자유는 바로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 헌법의 한 특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모든 권리의 출발점인 동시에 그 구심점을 이루는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아니할 수 없고, 이는 각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에 관하여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언론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 엄중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방법에 의하여 그 해결책을 찾았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의 시민혁명을 계기로 국가에 의한 검열제도가 폐지되자 언론의 자유의 남용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민·형사상의 일반구제절차만으로는 개인의 인격권의 보호가 불충분하다고 인식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프랑스는 1822. 3. 25. 출판법 제11조에서 모든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소유자 또는 편집자는 피해자로부터 반론이 있을 때에는 반론의 수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만일 3일 이내에 발행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호에 무료로 반론을 게재할 것을 규정하여 이른바 반론권을 입법화하였다.

한편 독일에서는 프랑스의 반론권 제도를 본받아 제정된 1874년의 제국언론법이 정기간행물에 관청 또는 개인에 관한 사실이 보도되었을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책임편집자에게 사실적 주장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성질은 언론기관의 고의, 과실 등 주관적 요건을 따지지 아니하며, 보도된 사실적 주장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의 「정정」이라는 용어는 그후 「반박권」 또는 「반론권」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반론권제도를 받아들인 나라들의 법제는 오늘날 크게 프랑스형과 독일형의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프랑스형의 반론권은 사실상의 주장은 물론 논평·비판 등의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대하여도 반론을 허용하여 반론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데 반하여 독일형의 경우는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서만 반론을 허용하여 반론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

(2) 의의 및 성질

이 법 제16조 및 방송법 제41조에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발행인이나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 대하여 그 피해자의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게재 또는 방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위 법률조항은 비록 그 표제 및 법문 가운데 「정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을 보면 명칭과는 달리 위에서 본 독일의 예에 따라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반 반박의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반론권」을 입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정정보도청구는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취지로는 다음의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며,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론권제도가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집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진실 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3) 헌법상의 근거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제21조의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비록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에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등의 희생은 강요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헌법의 위 조항들을 종합해 볼 때 언론기관에 의하여 일반적인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은 피해자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한 방어의 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이 규정한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바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보도된 사실적 내용에 대하여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한 여론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보도의 객관성을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 아래 헌법의 위에 든 각 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나. 법률조항의 명칭

이 법 제16조에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성격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론권임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은 이를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에 관한 실무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어 마치 언론기관이 자신의 보도에 대하여 잘못을 시정하는 내용의 정정문을 싣는 것인 양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보도내용의 진위를 가리지 아니한 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는 현행 법제 아래에서 정정보도문이 만약 이름 그대로 언론보도의 잘못된 보도내용을 바로잡는다는 정정의 성격을 갖고 그와 같은 의미로 게재된다면, 이는 보도의 자유와 편집·편성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정보도문은 그 명칭의 표현과는 달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도된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을 내용으로 하는 반박문의 성질을 가지고, 정정보도청구인의 이름으로 게재되고 있는 실무를 고려한다면, 비록 「정정」이라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인격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부적합한 수단을 입법화함으로써 언론자유에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법문이 비록 「정정보도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박문의 표제를 꼭 그와 같이 내세워야 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상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이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안에 관하여 제목과 내용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칭이 바로 위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여부

(1) 문제의 제기

이 법 제16조에 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이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보도내용의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정정보도문을 무료로 게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는 현실적으로 정기간행물의 편집 내지 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됨은 물론 간접적으로 보도기관의 보도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경영을 압박함으로써 보도의 자유에 대한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론권은 보도기관이 사실에 대한 보도과정에서 타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요청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인 것이지 언론의 자유

를 제한하기 위한 소극적 필요에서 마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도기관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의 문제는 결국 피해자의 반론권과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은 이 법에 규정한 정정보도청구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목적이 정당한 것인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단 또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인격권과의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는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2) 제한의 목적

이 법이 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기간행물의 보도에 의한 인격권 등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게 반론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른바 「반론권」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그 바탕을 둔 것이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도 함께 지닌 것이다. 따라서 그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제도의 존재 자체가 곧바로 보도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3) 제한의 적정성

(가) 반론의 범위

우선 정정보도문을 무료로 게재토록 한 것은 피해자의 반박 내지 반론을 보장하는 제도 자체가 이해당사자 사이의 법익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보도기관이 이로 말미암아 현실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평의 원칙에 따른 부득이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먼저 반론의 범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보도의 자유를 무리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과잉제한의 여부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첫째,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반론의 대상을 사실적인 주장에 국한함으로써 의견의 진술등 가치판단의 표현에 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이 법 제16조 제1항),

둘째, 사실적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권의 행사범위를 축소하고 있으며(이 법 제16조 제3항 단서),

셋째,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는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그 밖의 정기간행물인 경우에는 1월 이내로 제한하여 단기의 제척기간을 채택하여 언론기관이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있고(이 법 제16조 제1항),

넷째, 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고(이 법 제16조 제4항, 5항),

다섯째, 정정보도사건의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필요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해결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이 법 제19조 제1항).

또한 내용상 반론의 제도인 점에서 언론기관의 이름으로 하는 정정보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으로 해명한다는 점에서 언론기관의 명예 및 신뢰성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는 되지 아니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자유를 일부 제약하는 성질을 가지면서도 반론의 범위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함으로써 양쪽의 법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나) 심판절차

이 법과 이 법 제1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정정보도등 청구사건심판규칙(1988. 3. 4. 대법원규칙 제1003호, 이하 이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직접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 중재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재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정정보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이 법 제18조), 한편 법원의 심판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되 별개의 본안 소송이 있지 아니하는 관계로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법 제19조 제3항 단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제소명령기간의 도과에 의한 취소도 있을 수 없다. 또한 정정보도명령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03조에 의한 이의의 신청이나 항소를 제기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고 있다(이 규칙 제8조).

청구인은 이와 같이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정정보도청구사건을 심판하고 이에 더하여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수단까지 제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재판청구권의 제한이라고 주장한다.

반론권의 제도는 전파력이 강한 대중매체인 정기간행물의 속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일정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복잡한 실제적인 권리관계를 따지지 아니하고 곧바로 인정하는 것을 제도의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전치요건으로 규정하여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해결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또한 원칙적으로 반론권제도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진실발견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보면 이 법이 위와 같은 중재를 필요적으로 거친 후의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심판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본안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이 유별나게 신속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부당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한편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규칙은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서 변론을 열 수 있도록 하되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쌍방을 심문하도록 하고 있고(이 규칙 제6조 제2항), 또한 민사소송법 제70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이 규칙 제7조 제3항) 담보의 제공만으로 소명을 대신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정정보도명령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0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항소를 제기하는 외에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규칙 제8조).

이 규칙의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이 정한 정정보도청구사건은 보도내용의 진위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록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판한다 하여 그 절차가 부당하게 간이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특별한 사정에 의한 취소, 제소명령기간도과에 의한 취소(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단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소환신청기간도과에 의한 취소가 본안 소송이 따로 없는 관계로 성질상 적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복절차의 제한은 법리상 당연한 것이다.

피해자는 언론기관의 보도에 대하여 즉시 반박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게 자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본안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그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면 대중이 그 사실을 망각한 다음에야 비로소 구제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므로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반론은 그것이 너무 늦게 집행된 나머지 현안성을 상실하여 독자나

시청자가 반론의 전제가 된 원래의 보도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반론권을 인정하는 근거 중의 하나인 공정한 여론형성에 참여할 자유나 객관적 질서로서의 언론제도를 보장하는 데도 반하는 것이 된다.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자체가 인격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여론의 형성을 위한 도구인 것일 뿐 진실을 발견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사요건은 비교적 형식적인 사유에 기한 제한적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도록 완화되어 있다. 또한 예외사유도 이 법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판단이 가능한 경우들이므로 반론권을 제도로서 인정하고 있는 한 그 심리를 위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민사소송법에 정한 본안절차에 따르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처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이 제도의 본질에 적합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오늘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여론의 형성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거대한 언론의 전파력과 언론기관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리적인 언론기업의 막강한 위세와 편견에 의하여 부당히 침해되고 노출될 경우에는 개인의 권익을 신속·적절히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 또한 마련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물론 부당한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정한 전통적인 일반원칙과 절차에 따라 명예훼손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로써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대중매체인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침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의 방법은 사후적인 것이고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의 곤란 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으로써 명예회복의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에는 부족함이 적지 아니하다. 이에 반하여 반론권은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보도가 행해진 시간과 근접하여 그 사실주장을 반박할 기회를 주는 점을 특색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론의 제도와 언론의 자유의 관계는 단순히 제도의 평면적 비교나 판단보다 기본권간의 조화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현행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론게재청구권으로 해석되고 이는 언론의 자유와는 비록 서로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는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인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은 결코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 재판관 중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하의 정정보도청구권이 반론권임이 명백하다는 전제하에서 합헌이라고 이론구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이 우리 법의 구조상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지 않으며 쉽게 논증되기가 어렵다. 원래 우리나라의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독일의 바덴 뷔르템부르크주의 언론법상의 반론권이 그 모법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대비하여 살펴본다.

첫째로, 독일법은 우선 표제부터 반론청구권(Gegendarstellungsanspruch)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기왕의 보도내용에 관련있는 자 자신의 반론제재요구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나, 우리 법의 경우(법 제16조)는 어디에도 반론권 내지 반박권이라는 표현은 없고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도자에 대한 그 보도내용의 정정요구인 것으로 보이게 하였다.

둘째로, 독일법은 기사에 관련있는 자의 반론(Gegendarstellung)을 인쇄할 의무로 규정하여 기왕의 보도된 것은 별도로 두고 그에 대한 반박문을 내어 줄 것의 청구로 이해되게 되어 있으나, 우리 법에서는 정정보도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의무로 규정함으로써 기왕의 보도된 내용은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고쳐 바로잡아 보도할 것의 청구로 보이게 하였다. 즉 문언상 이른바 정정기사청구로 보이게 한 것이다. 따라서 독일법에 있어서는 문제된 기사와 동일한 간행물 부분에 동일한 문자로써 인쇄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가히 보도된 내용과 대조되는 관계 당사자의 반대 입장의 보도임을 뚜렷히 하였으나, 우리 법에서는 정기간행물의 어디에 어떠한 문자로 보도하는 것인지에 대해 규정하지 아니하고 기왕의 보도내용의 자수보다는 정정보도문의 자수가 초과할 수 없다고 할 뿐으로 기왕의 기사에 대한 관련자의 반박문 보도로 해석될 소지가 별로 없다. 우리 법상 정정보도의 내용이나 크기에 관하여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피해자측과 협의한다고 하고(법 제16조 제3항),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을 정한다고 하였기 때문에(심판규칙 제7조) 청구권자가 정정보도문을 주도적으로 정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셋째로, 독일법의 경우는 관련자(Betroffen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도의 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기사 관련자의 그와의 반대입장을 게재하는 절차로 이해하게 하였지만, 우리 법에서는 「피해자」를 정정보도청구권자로 규정함으로써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권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구제절차인 것으로 해석하기에 적합하며, 더구나 본법이나 그 시행령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을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의 일환으로 각 규정함으로써 오보에 의한 명예권의 침해가 있었는가를 가리는 절차로 보여지기 쉽게 되어 있다.

넷째로, 우리 법에서는 중재 전치주의를 취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쳐야 한다(법 19조). 이 점이 중재절차의 전치 없이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독일법과는 다른데, 만일 정정보도청구절차가 단순한 기사의 관련 당사자의 반박문게재청구절차에 그친다면 이와 같은 중재절차의 중간개입은 공연히 절차만 지연시키는 것뿐 제도목적에 걸맞는 것이 될 수 없다. 법 제17조 제1항을 보면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고 하였으며, 중재절차에서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법 제18조, 법 시행령 29조 단서), 이 또한 보도내용의 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기사관련자의 반박문게재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근거라고 할 것이다.

이상 본 바를 종합하면 정정보도청구절차는 보도내용의 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보도기사 관련자 자신의 반론게재청구절차임을 분명히 한 독일법과는 거리가 있으며 문리상으로나 논리상으로 오히려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따져 이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인 것으로 보아 무방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정보도청구권이 입법 연혁상 독일법의 반론권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판례에서도 반론권인 것으로 판시되고 있다 하더라도 제도 본지 대로 실무상 반론권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돌이켜 1987년 이 법이 제정된 후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언론중재위원회측은 신문·방송·잡지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위원회와 상의할 것을 당부하는 홍보를 내는 실정이다.

나. 이렇듯 용어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반론권이라고 단정되기 어려움에도 법 제19조 제3항은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하였다(법 제19조 제2항). 따라서 가처분절차에 의하는 이상 대석적 변론을 열어야 하는 필요적 변론절차가 아니며 대석변론 없이 당사자 쌍방을 심문하는 것으로 족하다(심판규칙 제6조 제2항). 변론을 열지 않고 결정으로 재판할 수 있으며 공개재판에 의할 필요

가 없다. 청구의 이유에 대해 증명까지 이르지 않고 소명만으로도 족하다. 또 상소제기의 경우에 민소법 제473조, 제474조에 의해 재판의 집행정지를 시킬 수 없다. 결국 정정보도 청구절차는 대석적 공개심리주의에 의하지 않으며 신속에만 치중하는 간이 약식재판 절차인 것이다. 생각컨대 기왕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관련 당사자의 반박문게재청구절차 정도의 가벼운 것이고 우리 법제가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약식절차에 의하여도 어떠한 절차적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다.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현행법상의 정정보도청구제도 역시 민법 제764조와 마찬가지로 명예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원상회복청구 제도로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통상인의 이해력을 기준으로 할 때에 기사 관련자의 반박문게재청구인 것으로 이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법 제764조가 명예훼손 일반의 경우에 원상회복에 관한 것이라면, 정정보도청구는 정기간행물에 의해 명예가 훼손된 특수경우의 원상회복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적합하다. 이 점은 심판규칙 제7조 제2항에서 법원은 정정보도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뒷받침이 된다.

다. 그렇다면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도 민법 제764조에 의한 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소송사건처럼 정식 재판절차에 의하는 것이 옳지 통상의 소송사건과 달리 약식절차에 의하게 함으로써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으로 하여금 명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충분한 방어 기회 보장하지 않고 상소의 경우 집행정지규정의 배제 등 절차상 불이익을 받게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기간행물의 발행 주체에 대한 법적 차별이며 법원 앞에서의 평등(헌법 제11조,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아가 현행법의 정정보도청구제도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한 정식 재판절차에 보장되는 헌법 제109조의 대석적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판결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절차적 기본권의 침해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본다.

생각컨대 법 제19조 제3항이 위헌임을 면하려면 기사 관련 당사자의 반박문게재청구인 것으로 순화되고 뚜렷해지도록 현행법의 표현부터 재정비 되어야 할 것이고 언론기관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회복처분이 정정보도청구인 것으로의 오해소지가 불식되도록 법이 새로 고쳐지고 다듬어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는 반박문게재의 재판절차가 비록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심리된다 하여도 헌법상의 절차적 기본권의 침해의 위헌소지는 깨끗이 청산

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이에 우리는 위헌요소 제거를 위한 새 입법을 촉구하는 바이다.

1991. 9. 16.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재판관 이 성 렬

재판관 변 정 수

재판관 김 진 우

재판관 한 병 채

재판관 이 시 윤

재판관 최 광 릉

재판관 김 양 균

재판관 김 문 회

재판관 이성렬은 정년퇴임으로 서명할 수 없음.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訂正報道請求 및 追後報道請求에 의한 분쟁을 仲裁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 제도적 장치로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 간의 訂正報道請求 및 追後報道請求에 의한 분쟁을 仲裁하여 합의를 성립시켜 줌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침해의 내용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是正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서는 異議대상인 報道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訂正報道文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피신청인의 수에 해당하는 副本의 제출을 바랍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창구에는 중재신청서 용지를 비치하고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결과

*중재신청기간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분쟁된 공표가 있는 후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된 후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위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중재불성립으로 간주됩니다.

***중재기일에서의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중재기일에 중재대리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중재대리허가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당해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철회간주**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訂正報道請求 및 追後報道請求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訂正報道請求 및 追後報道請求의 신청은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提起하여야 합니다.
- 중재불성립의 증명을 要求하시는 분에게는 그 증명서를 교부해 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전국 14개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헌직법관**

言論仲裁委員會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0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 사무처가 있습니다.

70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仲裁業務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4개, 부산, 대구, 광주, 수원, 춘천, 청주, 대전,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4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長은 헌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구역**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언론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관련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第16條(訂正報道請求權) ① 定期刊行物에 公表된 事實의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公表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日刊新聞 또는 通信의 경우에는 14日 이내에, 그밖의 定期刊行物의 경우에는 1月 이내에 書面으로 發行人이나 編輯人에게 訂正報道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② 訂正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記事의 本文과 게재를 요청하는 訂正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發行人 또는 編輯人이 訂正報道掲載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과 訂正報道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日刊新聞과 週 1回 이상 발행하는 定期刊行物 및 通信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日 이내에 같은 定期刊行物에, 그밖의 定期刊行物은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發行號에 이를 無料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訂正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請求된 訂正報道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訂正報道는 事實의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 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訂正報道의 내용은 讀者投稿의 形式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訂正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와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記事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7條(言論仲裁委員會) ① 訂正報道請求에 의한 分爭을 仲裁하고 定期刊行物의 게재 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言論仲裁委員會(이하 “仲裁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仲裁委員會는 40人 이상 7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委員은 學識과 經驗 및 德望이 있는 者 중에서 公報處 長官이 위촉하되, 委員의 5分の 2이상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者 중에서 法院行政處長이 추천한 者를 위촉한다.

③ 仲裁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2人을 두되, 각각 委員 중에서 互選한다.

④ 仲裁委員會의 委員長·副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각각 3年으로 한다.

⑤ 政黨의 黨籍을 가진 者와 公務員(法官의 資格을 가진 者 및 教育公務員은 제외한다)은

仲裁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⑥ 仲裁委員會의 委員은 法律과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職務를 행하며, 職務上 어떠한 指示도 받지 아니한다.

⑦ 仲裁委員會의 委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當과 實費補償을 받을 수 있다.

第18條(仲裁節次 등) ① 訂正報道請求權이 있는 者 또는 그 상대방은 紛爭된 公表가 있는 날로부터 1月(第16條 第1項의 경우에는 訂正報道를 請求한 날로부터 14日) 이내에 書面으로 仲裁委員會에 仲裁을 申請할 수 있다. 仲裁申請에 관하여는 第16條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仲裁은 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된 仲裁部에서 하되, 그 仲裁部の 長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委員이어야 한다.

③ 仲裁部の 長은 필요한 경우 당해 仲裁事件의 대상 定期刊行物의 發行人에게 仲裁對象 表現物이나 그 寫本의 제출을 命하거나 仲裁에 필요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④ 仲裁部の 長은 仲裁當事者나 利害關係者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는 者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第4項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仲裁申請人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裁申請을 撤回한 것으로 보며, 被申請人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裁申請 내용대로 訂正記事를 게재하기로 合議된 것으로 본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正當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疏明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仲裁結果 當事者間에 合議가 成立된 경우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議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裁判上 和解와 동일한 效力이 있다.

⑦ 仲裁은 仲裁申請이 접수된 날로부터 14日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期間이 경과한 때에는 仲裁가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 仲裁委員會는 定期刊行物에 의한 침해사항을 審議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發行人에게 是正을 勸告할 수 있다.

⑨ 仲裁의 節次와 仲裁部の 구성방법, 그 管轄, 事務處의 組織, 是正勸告의 방법과 節次, 仲裁委員會 委員의 手當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訂正報道請求事件의 審判) ① 仲裁委員會의 仲裁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法院에 訂正報道請求의 審判을 請求할 수 없다. 法院에 訂正報道請求의 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仲裁가 成立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14日 이내에 請求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한 第1審 裁判은 被告의 普通裁判籍 所在地의 地方法院 合議部의 管轄로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假處分節次에 관한 規定에 의하여 裁判하며, 請求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法院은 第16條 第3項 내지 第5項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訂正報道의 게재를 命할 수 있다. 다만, 民事訴訟法 第697條 및 第705條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④ 訂正報道請求事件의 裁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20條(追後報道請求權) ① 定期刊行物에 의하여 犯罪嫌疑가 있다거나 刑事上의 措置를 받았다고 報道된 者는 그에 대한 刑事節次가 有罪判決 이외의 형태로 終結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書面으로 發行人이나 編輯人에게 이 사실에 관한 追後報道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追後報道의 내용은 請求人의 名譽나 權利回復에 필요한 範圍에 局限한다.

③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訂正報道請求權에 관한 이 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1條(補助金) 國家는 豫算의 範圍 안에서 仲裁委員會에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보처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장의 출석요구를 받은 중재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출석요구서와 함께 2차 중재일을 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피신청인이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중재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신청인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조서)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중재화해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중재신청사건에 대한 시정권고는 관할중재부가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권고한다.

⑤ 중재신청사건에 대한 시정권고는 당해 중재부의 소속 중재위원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중재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하며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권고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⑧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보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보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송법

第41條(訂正報道請求權) ① 放送에 公表된 事實의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公表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日 이내에 書面으로 放送局의 長이나 編成責任者에게 訂正報道的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② 訂正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報道內容과 放送을 요청하는 訂正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放送局의 長 또는 編成責任者는 訂正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代理人과 訂正報道的 內容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無料로 放送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訂正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訂正報道的 內容이 명백히 事實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④ 訂正報道는 事實의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內容을 포함할 수 없다.

⑤ 訂正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放送局의 長 또는 編成責任者가 행하는 訂正報道는 그 公表가 행하여진 동일한 放送周波數에 의하여 동일한 效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과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放送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42條(다른 法律의 準用) 放送에 관한 訂正報道請求에 의한 紛爭의 仲裁과 그 節次에 관한 사항과 訂正報道請求事件의 審判에 관한 사항 및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 관한 法律 第17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관한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합유선방송법

第45條(訂正報道請求權) ① 綜合有線放送에公表된 사실적主張에 의하여被害를 받은者(이하“被害者”라 한다)는 그公表가 이루어진 날부터 30日 이내에書面으로綜合有線放送局의長이나編成責任者에게訂正報道的放送을請求할 수 있다.

② 訂正報道請求書에는被害者 또는 그代理人의署名·捺印과住所를 기재하고,異議對象인報道內容과放送을 요청하는訂正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綜合有線放送局의長 또는編成責任者는訂正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지체없이被害者 또는代理人과訂正報道的內容등에 관하여協議한 후 이를無料로放送하여야 한다. 다만,被害者가訂正報道請求權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請求된訂正報道的 청구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商業的인廣告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이의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④ 訂正報道는 사실적陳述과 이를 명백히傳達하는 데 필요한說明에局限되고,違法한內容을 포함할 수 없다.

⑤ 訂正報道文의字數는異議의 대상이 된公表內容의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綜合有線放送局의長 또는編成責任者가 행하는訂正報道는 그公表가 행하여진 것과 동일한 채널 및時間帶에 동일한效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第1項의訂正報道請求에 프로그램供給者가 함께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프로그램供給者도第6項의規定에 의한 방법으로訂正報道義務를 이행하여야 한다.

⑧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公共團體의公開會議와法院의公開裁判節次에 관한事實放送의 경우에는第1項 내지第7項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綜合有線放送에 관한訂正報道請求에 의한紛爭의仲裁와 그節次에 관한 사항과訂正報道請求事件의審判에 관한 사항 및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 관한法律第17條 내지第20條의規定을準用한다.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 제4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